산업통상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11. 20.(목) 11:00 < 11.20. 석간 > 배포 2025. 11. 20.(목)

광양시, 철강산업 위기로 인한 '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'으로 지정

-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수요침체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 대응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(위원장: 산업통상부 장관)를 통해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, '25년 11월 20일부터 '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.

*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: (위원장) 산업부 장관, (위원) 기재부·행안부·고용부·국토부·중기부·금융위 차관(6명) 및 민간위원(6명)

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 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, 「철강산업 고도화 방안(11.4.)」을 발표한 바 있으며, 금번 지정은 전남 여수(석유화학, 5.1.), 충남 서산(석유화학, 8.28.), 경북 포항(철강, 8.28.)에 이어 「지역산업위기대응법」의 절차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네 번째 사례이다.

지난 10월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였다. 광양시는 생산의 88.5%, 수출의 97.5%, 고용의 9.7%*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,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,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.

* 출처: 생산·수출(한국산업단지공단의 「전국산업단지현황」), 고용(통계청 「전국사업체조사」)

산업부는 「지역산업위기대응법」의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검토하고, 광양 현지실사(10.21.),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,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(서면, 11.17~19.)를 거쳐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.

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*,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**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.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·상환유예를,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·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.

* (중진공)한도10억원, 기간5년(거치2년), 금리3.71%, (소진공)한도7천만원, 기간5년(거치2년), 금리2.68%

** 지방투자촉진보조금: (대기업) 설비 4~9% → 12% (중견기업) 입지 5~25% → 30%, 설비 6~12% → 20% (중소기업) 입지 9~40% → 50%, 설비 8~15% → 25%

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,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*,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(기업지원, 인력양성)도 할 예정이다.

* (대상)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관련 중소·중견기업 (대출한도) 10억원 (이차보전율) 3%p

그 밖에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, 경영자문,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'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	책임자	과장	김봉석 (044-203-4420)
		담당자	서기관	김등용 (044-203-4422)
		담당자	사무관	한정선 (044-203-4425)
		담당자	사무관	오승교 (044-203-4427)
		담당자	주무관	염정아 (044-203-442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 개요**

□ 산업위기지역의 위기 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**이차보전**(중소·중견기업), **맞춤형지원**(기업지원, 인력양성 등) 사업 추진

□ **이차보전 지원**

○ **(대상)**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·후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*

* 1.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·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
2.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·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
3.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·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

○ **(지원내용)** 산업위기지역 중소·중견기업 자금 신규대출* 이차보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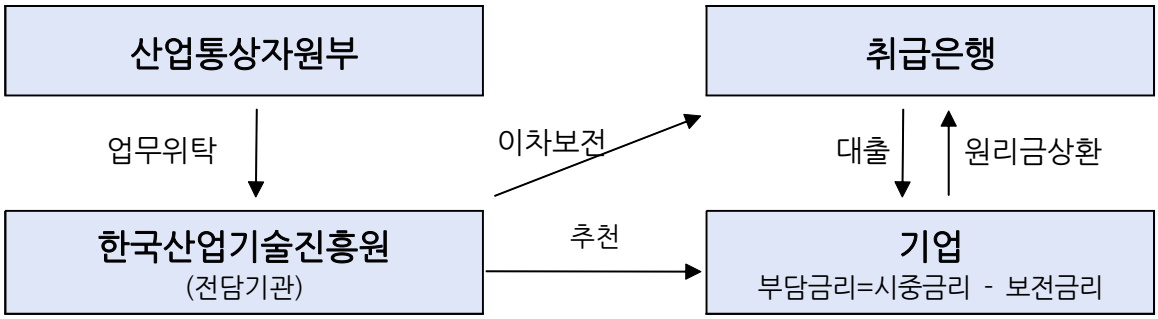
* 산업위기지역 지정·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(대환대출 제외)

- **(한도/금리)** 기업당 10억원*(운전자금) / 이차보전율 3.0%p

* 기존 대출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(10.21. 변경공고)

- **(지원기간)**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이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

○ **(추진체계)**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취급금융기관 경남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광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아이엠뱅크, 우리은행, 부산은행, 하나은행, 한국산업은행



□ **맞춤형지원**(기업지원, 인력양성)

○ **(대상)**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·후방 산업 관련 기업, 근로자 등

○ **(기업지원)** 사업재편 및 기업경쟁력 강화,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

○ **(인력양성)** 산업위기 지역내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
[맞춤형지원 프로그램(안)]

맞춤형지원	구분	지원 프로그램
기업지원	기술지원	시제품 제작, 특허·인증지원, R&D 관련 기술지도, 디지털전환 및 제품 고급화 지원 등
	사업화지원	해외 전시회 참가, 수출 활성화, 중장기 사업화 컨설팅, 수용기업용 완성품 홍보 샘플 제작 지원 등
인력양성	산업 맞춤형 교육	기업 수요 기반, 지역 위기산업 관련 기반기술 특화, 연구개발·특허 창출 전략 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	실습형 교육	기업 현장실습형, 위기산업 내 SW, IT 관련 직무 전환 등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

※ 맞춤형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, 산업위기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내용은 상이

○ **(추진체계)**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, 수행기관지역혁신기관

